

부산지방법원 2018. 8. 24 선고 2017나47076 판결 [구상금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최병주

피고, 항소인 1.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로

담당변호사 이동성

변 론 종 결 2018. 6. 22.

판 결 선 고 2018. 8. 24.

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가단321820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C 및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239,2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2016. 6.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6. 8. 17.까지는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제1심판결의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① 피고 D과 피고 C 사이에 2016. 3.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② 피고 D은 피고 C에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 4. 26. 접수 제245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4면 18~19행의 “1/2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던 중(이하에서는 ‘이 사건 제2 부동산’ 등으로 표시한다),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 4. 26. 접수 제24588호로 2016. 3. 31.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를 “1/2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던 중(위 ②, ③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이하에서는 ‘이 사건 제1, 2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 4. 26. 접수 제24588호로 2016. 3. 31.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5면 14~15행의 “2015. 12. 22.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사임하고 퇴사하면서 동시에 원고에게 사임에 따른 연대보증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통보하였고”를 “2015. 12. 22.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사임하고 퇴사한 직후인 2015. 12.경부터 2016. 1.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사임에 따른 연대보증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통보하였고”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6면 5행의 “그 주장과 같이 2015. 12. 22.경”을 “그 주장과 같이 2015. 12.경부터 2016. 1.경까지 사이에”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6면 8행의 “① 원고가 전화로 통화를”을 “① 피고가 전화로 통화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6면 16행의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2015. 12. 22.경 원고에게”를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제1심 증인 H, 당심 증인 I의 각 증언만으로는 2015. 12.경부터 2016. 1.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7면 7행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부담한다는”을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8면 10행 이하의 “나.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증여 당시 피고 C의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137,239,231원이 있었던 점,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J의 채권최고액 60,000,000원(2007. 8. 31.자) 및 채권최고액 127,000,000원(2015. 11. 16.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의 2016. 4.경 시가는 275,000,000원이며, 피고 D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시가는 합계 약 6,000만 원¹⁾ 인바,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피고 C의 책임재산은 104,000,000원[= 60,000,000원 + (275,000,000원 - 127,000,000원 - 60,000,000원) × 1/2]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은 이 사건 증여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인 원고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C이 이 사건 내용증명을 발송한 시점 및 이 사건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시점, 피고들의 인적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 C의 사해의사도 넉넉히 인정되며, 피고 D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피고 D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이 사건 증여는 2016. 3. 31.에 있었고, 피보전채권은 그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비록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2016. 3. 31.자 증여'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짜는 2016. 4. 26.인 점, 피고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내용증명을 발송한 시점도 주식회사 B의 근로자들이 소외 회사에 체불임금을 요청한 2016. 4. 21.임에도 그 작성일을 그보다 약 20일이나 앞선 2016. 3. 31.로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가 실제로 2016. 3. 31.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해행위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6. 4. 26.경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사 실제로 이 사건 증여가 2016. 3. 31.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참조),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2015. 7.경 체결되었고, 주식회사 B가 2016. 3.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위 구상금채무가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이 사건 증여 이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해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도, 판사 정진화, 판사 박종현

1) 피고 D은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공시지가자료 외에 시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위 피고가 주장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